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
제3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(안)

검 토 보 고 서

(행정문화국 소관)

2021. 6. 14.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(안)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28일 의안번호 제2082호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예비비 지출내역

가. 지출내역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지출잔액	지출사유
	단위	세부	통계목				
합 계				1,871,442,000	1,740,239,926	131,202,074	
행 정 지 원 과	고객수요에 부 응 하 는 행 정 지 원 체 계 유 지	효 율 적 인 청 사 관 리	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	31,736,000	31,736,000	0	코로나19 감염증 확산 관련 해외입국자 수송등 업무(국내거주지 이동과정 자치구특별관리)를 위한 기간제운전원 긴급채용 필요
	직 원 후 생 복지및노사 협 력 증 진	산 업 재 해 예 방 을 위한 안전, 보 건 관 리 체 계 도 입	사 무 관 리 비	19,800,000	19,800,000	0	코로나19 감염증 감염병 위기경보 및 관내환자 발생에 따라 직원감염에 대한 긴급예방대책으로 즉시 수급이 가능한 면마스크를 구매
마 을 자 치 과	구 민 구 정 참 여 지 원	코 로 나 1 9 관 련 긴 급 재난지원금 지 원 사 업	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	4,104,000	3,349,187	754,813	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구비 매칭분
			민 간 인 재 해 및 복 구 활 동 보 상 금	1,608,737,000	1,573,492,759	35,244,241	
			민 간 인 재 해 및 복 구 활 동 보 상 금	207,065,000	111,861,980	95,203,020	정부재난지원금 추가재원 소요 발생금액 통보

나. 검토의견

○ 2020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예비비 집행 잔액은 3건 1억 3,120만 2천원이며, 행정지원과는 집행잔액이 없고, 전액 마을자치과 집행잔액임.

○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“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지출”하는 것으로, 행정문화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이며, 법령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관련 법령 1부.

붙임 관련 법령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29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6855호, 2019. 12. 31., 타법개정]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>